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보도자료

보고	2017. 12. 21.(목) 석간	배포	2017. 12. 20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	김범수 팀장(3145-8521), 권순표 수석(3145-8526)
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목 : 젊은 여성(1인), 보이스피싱으로 8억원 피해 발생
- 연말연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

1 개요

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과 경찰청이 2차례에 걸쳐 소비자경보를 발령* 했음에도 불구하고

* '17.4.6. 「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, 소비자경보 발령」,
 '17.11.2. 「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, 소비자경보 “경고”로 격상!」 참조

○ 최근 젊은 여성 1인이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의 자금(8억원*)을 편취 당한 피해 발생

* 1인 피해금액으로 최대이며, 기존 1인 최대 피해금액은 3억원('17.6월)임

○ 사기범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

- 사기범이 알려주는 안전계좌(사실은 대포통장 및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)로 8억원을 송금케 하고 가상통화를 구입한 후 이를 편취

연말연시 보이스피싱이 기승*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

* 피해액(월평균) : 182억원('17.1~10월) → 280억원('17.11월~12월 예측치)[53.8% ↑]

2 피해 사례*

*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편집

- ①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, 피해자에게 피해자(甲)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접근
- 명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,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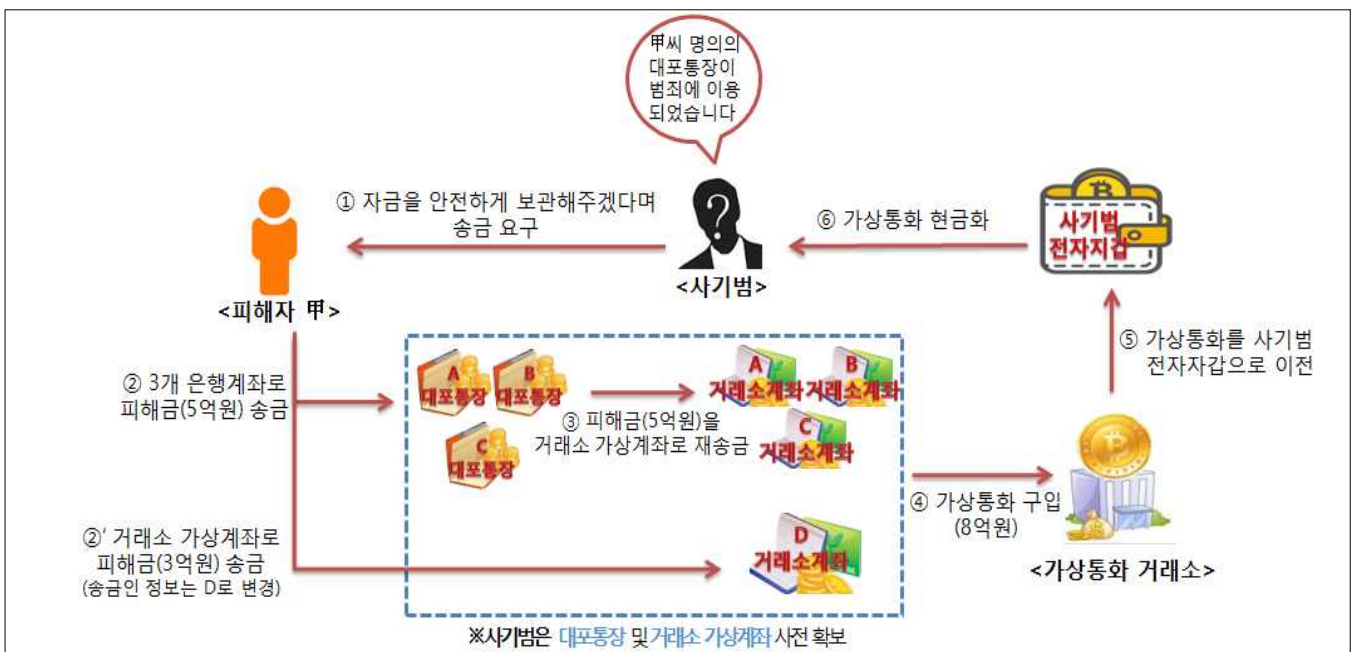
②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주는 4개의 계좌로 총 8억원 송금

- 은행 대포통장 3개(각각 A, B, C 명의)로 5억원 송금[이후 사기범은 동 금액을 다시 A, B, C 명의의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재송금]
-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(D 명의)*로 3억원 송금

*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명이 불일치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고 있어, 사기범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(甲)에게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(D)으로 변경하여 송금할 것을 요구

- ③ 사기범은 A, B, C, D 명의의 8억원의 가상통화(비트코인)를 구입한 후 이를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여 현금화

검찰 사칭 및 가상통화를 악용하여 8억원을 편취한 사례



3 소비자 유의사항

-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
 - 수사기관·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*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
 - *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
 -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*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림
 - * 경찰청(☎112), 검찰청(☎02-3480-2000), 금감원(☎1332)
 - 한편, 송금인 정보를 변경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% 보이스피싱임을 명심
- 지연이체서비스*를 적극 활용하고, 이체금액 한도를 줄여 놓는 것이 안전
 - *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(최소 3시간) 경과 후 입금 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취소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음

4 향후 대응방안

- 20~30대 여성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(인터넷뱅킹 이체 및 창구 고액현금 인출시 문진 등)를 한층 강화하고,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동 사례를 집중 전파
 - '17.12.1.~'18.1.31. 기간 중 금감원과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실시
- 최근 가상통화가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통화 거래소와 협력*하여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 중
 - * 가상통화 거래소는 비금융 사기업이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적인 지도, 감독이 어려움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